

## 일본의 '정신대' 할머니에 대한 제2차 가해 요지

### 1. 일본정부의 2차 범죄

#### 1) 증거자료 인멸과 은폐

① 내무관료였던 Okuno Seisuke 전 문부상은 패전 직전 육해군과 협의하여, Hara Bonfee (原文兵衛, 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)등과 함께 중요자료를 소각시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증언.

② 육군의 경우 1945년 8월 15일 Itsigayatai(市市谷台)에서 육군연락회의가 열렸는데, 이때 육군성으로부터 기밀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각하라는 구두 지시가 내려졌다. 당시 Tamura Hiroshi 포로정보국장은 포로 관련 기밀·극비 자료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.

#### 2) 법적 책임의 회피와 국제인권법·윤리의 부정

일본정부는 1993년 8월 일본 각료 외교고문실이 편찬한 '戰時 慰安婦'라는 공식적인 연구 문건에서 '慰安所(comfort station)' 설치에 일본정부가 개입하였음을 시인하였다. 그 이후 비로서 일본정부는 과거의 '위안부(comfort women)'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을 준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하였다. 그러나 이러한 사과와 시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'위안소'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군 및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. 이것은 곧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인권법과 윤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.

#### 3) '정신대'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

일본정부는 법적인 배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(Asian Women's Fund)을 이용함으로써 '정신대' 할머니들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시켰다.

### 2. 일본사회의 2차 가해자와 명예훼손(이른바 '망언')의 논리

#### 1) 주요 가해자

개인 : Huzioka Nobukasu(동경대학 교수), Nisii Kanzi(전기통신대 교수), Kohayasi Yosinori(만화가)

단체 : 自由主義史觀研究會,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쓰는 모임, Sankei신문, Bungeishunju(文藝春秋), Sapio, 昭和史研究所,

도쿄 지방재판부(1999년 10월 1일의 판결)

#### 2) 명예훼손

① 강제연행 부인 : 일본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사실이 아니다

② 공창제도의 일환이다 :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안부가 있었고, 미군도 일본 점령 후 위안소를 만들었다.

③ 매춘행위(商行為)이다 : 위안부는 실제로 직업적 매춘부로서 그들의 활동은 상행위였다. 그리고 매춘은 합법적이었다.

④ 증언을 믿을 수 없다 : 위안부 출신이라는 한국인의 증언은 더 없는 거짓으로서 反日本人이 감언으로 날조한 것이다.